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3457호)

2025. 11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전문위원 임명현

목 차

I . 제안경 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(안 제21조제3호)	2

I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정 부

나. 제출연월일 : 2025. 10. 2.

다. 회부연월일 : 2025. 10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.

Ⅲ. 검토의견

1.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(안 제21조제3호)

가. 주요 내용

□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”의 대상에 “학교 밖 청소년”을 추가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인력 양성사업의 지원)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21조(인력 양성사업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<u>학생</u> 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	3. ----- <u>학생</u> 및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<u>청소년</u> 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□ 현행법 제21조¹⁾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고, 제3호에서 “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”을 규정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해당 교육 대상에 “학생” 뿐 아니라 “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²⁾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”을 추가하려는 것임.

□ 동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제안한 10건의 법령³⁾ 중 하나로, 학교 밖 청소년등에 대한 법령상 불

1) 「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인력 양성사업의 지원)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2. 관련 분야 전공자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
3. 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
4.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
5. 양자산업 관련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
6.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2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3) [참고1] 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내용

공정·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법령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.

□ 개정안은 양자분야 인력양성 사업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하여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○ 참고로, 학교 밖 청소년 추정 규모는 2022년 기준 16만 7,925명⁴⁾임.
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‘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’과 동일하게 ‘학교 밖 청소년’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률상 잠재적인 불공정·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○ 다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현행법 제21조제3호를 근거로 하여 ‘초·중등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’을 지원하는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236

4) 여성가족부, 「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」, p.6., 2023.12.20.

참고1

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내용

	소관 부처	법령		내용
1	과학기술 정보통신부	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	제21조제3호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양자과학 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 상에 추가
2	농림축산 식품부, 해양수산부	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	제11조 제1항·제2항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농어업 현 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 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등
3	농림축산 식품부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	제53조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농촌지역의 학 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추가
4	농림축산 식품부	동물보호법	제4조제4항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동물보호 교육 대상으로 추가
5	산림청	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	제4조제2항 제6호가목	교육정원의 목적에 ‘학교 밖 청소년’의 교육 및 놀이가 포 함됨을 명확화
6	특허청	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제10조제1항, 제13조의2제2항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추가
7	특허청	발명진흥법	제6조제2호, 제27조제2항, 제55조제3항제7호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발명교육 경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
8	산업통상 자원부	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	제24조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뿌리산업 관련 체 험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으로 추가
9	해양수산부	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	제38조제1항제3 호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어촌지역 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
10	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			
↳	국가정보원	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	별표 6 비고	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
↳	특허청	발명진흥법 시행령	제2조제4호	‘학교 밖 청소년’도 발명활동 촉진사업 등의 대상에 추가
↳	외교부	외무공무원임용령	별표 3 비고 제7호	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기준에 미달하 여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하여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